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28호 2015. 10. 30.(금)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0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	1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	26

⇒ 뒷면 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3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4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	4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5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	6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7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3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5

⇒ 뒷면 계속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79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67호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87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 ---- 93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96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 107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71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8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72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16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873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24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 12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2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491호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38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3조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로,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없으면 이 조례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을 “제4조,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이내로”를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5항제2호 중 “대학교수, 구의회의원”을 “대학교수”로, “위촉하는 자”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당해직”을 “해당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및 운영에 관하여”를 “및 운영에”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를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신청자가”를 “신청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신청자를”을 “신청자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후단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와 관련된 각종 쟁송 및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법률 및 소송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법률고문과 소송고문을 둔다.

제3조(위촉)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변호사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의 법률고문과 3명 이내의 소송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방식)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법률 및 소송 고문을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대상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의 징계정보를 요구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구에서 요청하는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 및 그 밖에 법령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② 소송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헌법재판소 관할심판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선임에 관한 사항(범죄사범 제외)
3. 소송사건에 대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③ 소송고문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6조(임기) ①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위촉기간 중의 자문평가결과와 소송수행실적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종결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법률 및 소송 고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가. 불변기일 도과
 - 나. 소송 당사자측과의 담합
 - 다. 변론기일 불출석 등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소송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자문평가결과가 매우 저조한 경우
5. 법률 및 소송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자문료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에게 자문료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5호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공무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감사장”을 “청렴상, 감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헌신한 자”를 “헌신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

직자로서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한 자”를 “우수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된 자”를 “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헌신한 자”를 “헌신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10조제2항 중 “기념회장 기타”를 “기념회장,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를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로, “기타”를 “그 밖의”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년간”을 “1년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및 별표 2에 의한다”를 “및 별표 2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상장의 경우에는”을 “청렴상 및 상장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의한 질서상은 연4회”를 “따른 질서상은 연 4회”로 한다.

제1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 성 명	(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							③ 군 번(군인의 경우)							
④ 국 적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등급(직급·계급)				⑩ (근무기간) (수공기간)				
⑪ 공적요지(50자내외)						⑫ 공적분야코드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㉑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추천과			직위			년 월 일			성명			직인		

1202-2(2-1)일(1)

1984.1.26 승인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⑱ 년 월 일	⑳ 이 력	㉑ 년 월 일	㉒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㉓ 년월일	㉔ 내 용	㉕ 년 월 일	㉖ 내 용
㉗ 공 적 사 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⑩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조정 할 ”을 “조정할”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30세 이상의 책임감이 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이 위촉한다.

제7조제4항 중 “30일전”을 “30일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개통에 2인”을 “1개 통에 2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및 구산하기관”을 “및 구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구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시”를 “서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 시”로 한다.

제13조 중 “반상회운영”을 “반상회 운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편의제공)”을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

서 모범 통·반장 표창, 타 시·도 견학 및 교류, 통·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타 재정형편상”을 “그 밖의 재정형편 상”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해 지정된 자”를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센터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자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운영비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별 음악회 및 축제 등 개최 비용

제7조제8항 중 “구역내”를 “구역 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항중”을 “제1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전까지”를 “3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위원장 각 1인”을 “부위원장 각 1명”으로, “포함하여 25인”을 “포함하여 25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

제17조제3항 중 “의한 위원 위촉시 10인”을 “따른 위원 위촉 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각종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관할구역외”를 “관할구역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19호

인천광역시 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서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0호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 (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

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
 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 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 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

를 한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자유총연맹조직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별 세부내용(제3조 관련)

호	사업명	세부내용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민주가치구현활동 : 6.25음식시식회 및 호국안보전시회, 안보현장견학 ○ 나라사랑 서구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 민주시민실천운동 : 기초질서지키기, 그린환경만들기 운동 ○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지구촌 재난구조단 운영 : 건전한 생활의식 개혁운동, 학교폭력, 성범죄 예방 캠페인 전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1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행에 관하여”를 “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주1회”를 “주 1회”로 한다.

제8조 중 “”서구구청소식”으로”를 “”Green 서구”로”로 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매월1회”를 “매월 1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및 기타”를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타사항”을 “그 밖의 사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발행에 관한”을 “발행에”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하되, 1회에 한하여”를 “하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 중 “위촉을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실비보상내역 (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원 고 료	비고
전문기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평, 수필, 시, 연재소설, 영어 등 · 200자 원고지 1매당 × 10,000원 - 만화 1컷 10,000원 - 만평 40,000원 	
구민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민참여 독자 투고 · 1편당 30,000원 상당의 상품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행정정보시스템(이하"민원처리기기"라 한다)으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따른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납부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①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 각 호 및 별표 1과 같다.

1. 규격 : 가로 30mm 이내, 세로 30mm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기기 : 검은색

- ② 민원처리기기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및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여 설치기관명·설치장소·계기 고유번호·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 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발행 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서류는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무인발급기 준비금) ① 무인발급기 관리책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개시일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거스럼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무인발

급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비금은 세출예산에서 지출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항상 남아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무인민원발급기의 폐기·이전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준비금을 지체 없이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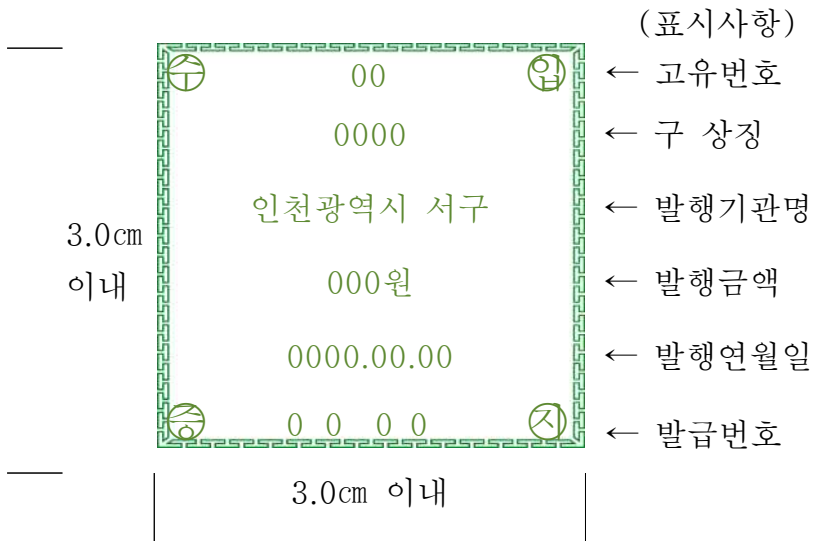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기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이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6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수입증지 규격 및 색채(제4조 관련)



1.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모양은 테두리가 있는 사각형으로 하고, 구의 특색 또는 상징을 도안으로 넣을 수 있으며, 색채는 초록색으로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기기의 경우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3.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서구청장 귀하

성 명			
주 소			
사 유			
환매금액		액면금액	
내 역			
종 별	수 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정보제공,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 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교육기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와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를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제3호 중 “제65조 제8항”을 “제6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67조 제4항”을 “제67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제5조 제3항”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 제3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67조 제1항”을 “제67조제1항”으로, “제67조 제2항”을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제6호”를 “제2조제6호”로,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소방·도로법”을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 제1항”을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을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제2조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 제2항 제1호”를 “제2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14조 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을 “(임시시장의 신고)”로 하고, 제16조 중 “등록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임시시장의 신고취소)”로 하고,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등록”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신청서”를 “신고신청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2조 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을 “한다)을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12조 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65조 제4항”을 “제6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5조 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를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조례」”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10년간”을 “10년 간”으로, “5년간”을 “5년 간”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말”을 “1월 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7조 제1항”을 “제67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의하여 법 제67조 제2항”을 “따라 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

67조 제2항”을 “다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104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인천광역시」를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로,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를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제67조 제2항”을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5항 중 “위반으로 인하여”를 “위반으로”로 한다.

제32조 중 “법규가 정하는 바”를 “법규”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5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구(이하“서구”라 한다)”를 “서구”로 한다.

제4조 중 “하며, 서구”를 “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8항 중 “사항에 대해서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11조”를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

규모점포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를 “제12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 규정”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농 교류에 따른 주민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로, “어촌 체험 마을(이하 “어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한다.

제2조 중 “어촌체험마을”을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 한다)”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 중 “어촌체험마”를 각각 “어촌체험·휴양마”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5인 이내로”를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구의회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유관기관단체장”을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자 및 기타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 및 그 밖의 어촌체험·휴양마”로,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망·질병·기타”를 “사망·질병·그 밖”으로, “임기만료전이라”를 “임기만료 전이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9조 중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업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사업비)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기술개발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
2.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3. 국내 제품인증획득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되는 사업

제5조(해외진출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해외지사화 지원
4. 해외시장조사 정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판단되는 사업

제6조(기업관련 단체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업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관리자 세미나 개최
2. 중소기업 한마음 화합행사 지원
3. 그 밖에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체간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교부·사용·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6.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7.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8.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용자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가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위생관련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 담당이 된다.
-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개인사정에 따라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
4.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제15조(용자대상) 식품진흥기금의 용자대상은 구 관내에서 법 시행령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구

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6조(용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업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구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용자 대출업소로서 용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④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용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대출절차는 구금고가 정하는 금융기관 약정을 따른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

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용자지원사항 보고 등) ① 구금고는 용자지원상황,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구금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9조(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금고 또는 기금을 용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의 사용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기금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조직으로, 이 조례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의미한다.
3.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

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5.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입소·퇴소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2.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구청장이 지역보장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한다.

③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복지국장, 보건소장, 생활보장과장, 희망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보육과장, 인재육성과장, 실무협의체위원장과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부서장

제6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자체 지침 또는 규정 등에 따라 의결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입소·퇴소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4.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각 위원회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최소 인원으로 하며, 관련분야 담당과장과 관련 법령에 제시된 당연직 위원과 현장전문가로 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련분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구성한다.

⑤ 전문위원회에 구성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 3분의 2와 학계 및 현장 전문

가로 3분의 1로 구성한다.

⑥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련된 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각 전문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⑨ 위원이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전문위원에서 해촉 될 수 있다.

⑩ 심의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 복지자원연계팀장, 위기가정지원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여성아동팀장, 보육행정팀장, 청소년팀장, 보건행정팀장, 일자리지원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협의체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실무팀장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총무는 실무분과 분과장이 실무위원 중 1명을 지명한다.

④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공무원(팀장 및 직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실무분과별 해당 당연직 공무원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동 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협의체를 둔다.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④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⑥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동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시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 ⑨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⑩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4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

② 협의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3. 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③ 협의체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며,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7급 3호봉 상당으로 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6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약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대표협약체, 실무협약체, 실무분과의 구성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원봉사 관리) 센터는 자원봉사시스템 등을 통해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센터 장”을 “센터장”으로, “회계 연도”를 “회계연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3개월”을 “4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말”을 “2월 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2항의”로, “대차대조표 등”을 “대차대조표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를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게”로, “자원봉사자에 대해”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 중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자에게”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밧,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인해 강제로 주거지에서 나가게 되는 경우
8.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로,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일부”를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
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규정”을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로 한다.

제5조 중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를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서구민”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조제2항 중 “서구”를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허위 기타”를 “허위,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후 30일 이내에”를 “후”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앞쪽)			
제1조	계약목적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예방접종업무에 대하여 정기(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2조	“수탁자”	의료기관명	요양기관번호
		요양기관종별	표시과목
		주소(소재지)	
		전 화	전자우편주소
		대 표 자	생년월일
		면허종별	면허번호
		의료정보시스템	[] 사 용 ※ 사용사업체명 : _____ [] 미사용
제3조	위탁계약 조건	별지 뒷면 참조	
제4조	신의성실 및 위탁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서에 의거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효율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제5조	계약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위탁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백신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임시)예방접종 <input type="checkbox"/> Flu(인플루엔자) 	
<p>위탁자와 수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본 위탁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탁자> 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수탁자> 의료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p>			
첨부서류	접종비용 상환용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계약 조건 (뒷쪽)

“수탁자”는 다음과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접종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서구 거주 () 이어야 한다.
- ② 대상자 1인당 1회 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만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며, 지정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단체접종시(노인정, 복지관 등) 접종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예방접종 비용은 본인부담 없이 1인당 ()원으로 한다.
단,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반드시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⑤ 비용상환 신청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접종 당일 입력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수기기록에 의한 청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보관에 있어서 항상 2℃ ~ 8℃의 냉장온도를 유지하여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⑦ 예방접종(인플루엔자)약품은 국산 제품 및 수입 완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단, 수입완제품(생백신포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접종비 지급은 국산제품과 같으며 접종자에게 추가 부담금을 받을 수 없다.
- ⑧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대상자 확인에 있어서 대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에 주소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일 1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거나, 보건소 예방접종 담당자를 통하여 주소를 확인한다.
대상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는 매년 결정되는 사항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개정사유

-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외부변호사 선임에 대한 규정 및 기준 마련으로 특수사건대응 능력 강화
- 법률자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법률자문의 주기능인 분쟁의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형사사건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소신 있는 직무수행 및 효율적 소송운영

주요내용

- 외부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 선임기준 및 퇴직공직자 특혜차단
【안 제3조】
- 고문변호사 형사사건 지급기준 신설 【안 별표】
- 법률자문에 따른 자문료 지급방식 변경 및 수당 현실화 【안 별표】

역시 서구(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소송 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사건을 배정하도록 노력한다.

③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소송 고문을 교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구에서 퇴직한 공직자가 외부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소속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1. 2개 이상의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재정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

제4조(자문료 등) ① 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소송 고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법률 고문에게는 자문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연간 총 자문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소송 고문이 아닌 외부변호사(법무법인 포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비용은 별표를 준용한다.

④ 소송 고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 보수 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과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

제5조(위촉현황 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 및 소송 고문 위촉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송비용 및 보수지급기준(제4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내 용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소송사건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700,000원	1. 전부 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 시에는 전부 승소 시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퍼센트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00,000원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00,000원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500,000원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000,000원	
	3억원이상 4억원미만	3,500,000원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000,000원	
	5억원이상	4,500,000원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형사사건	개인단독사건	2,000,000원	변호인의 특별한 노력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건 종결된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착수금의 한도로 구청장이 정하는 특별보수지급
	다수관련사건	3,000,000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4,000,000원	
기 타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법률자문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자문료	건당 10만원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자문회의	1시간 기준 회당 10만원 (30분 미만 절사)	법률고문 운영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함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확정판결 시에만 지급한다.
5. 직무관련사건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지급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 결과 및 평가표(제2조제2항 관련)

1. 법률고문 : ○ ○ ○
2. 자문 결과표

자문일자 (회시일자)	문 의 내 용	회 시 내 용	비고

3. 자문 평가표

평 가 항 목	점 수												
<p>1. 자문의 정확성(2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p> <p>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p>													
<p>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p> <p>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p>													
<p>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회신기일</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5일 이내</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7일 이내</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10일 이내</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13일 이내</td> <td style="background-color: #cccccc;">15일 초과</td> </tr> <tr> <td>점 수</td> <td>15점</td> <td>12점</td> <td>9점</td> <td>6점</td> <td>3점</td> </tr> </table>	회신기일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3일 이내	15일 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회신기일	5일 이내	7일 이내	10일 이내	13일 이내	15일 초과								
점 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4. 법률자문에 대한 기타의견(자유롭게 기술)

5. 자문 난이도 평가 [법률 고문 운영 부서]

평 가 항 목	점 수
<p>o 자문의 난이도(50점)</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p> <p>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p>	

[별지 제2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연번	자문일자	자문부서 (문서번호)	담당자	문 의 내 용	회 시 내 용

소 관할심판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사건에 있어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구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2호 서식)"를 "2호서식)"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를 "선고"로 한다.

제25조 다음에 "제5장 직무관련사건"을 삽입한다.

제5장에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수행절차)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확약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한 사건 수행의 처리절차는 소송사건의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하고, 형사사건의 대리인에게는 변호인 선임 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교부한다.

제27조(수임료)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와 같다.

제28조(비용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 일체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 :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해당 공무원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금액은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확 약 서

○ 소 속 :

○ 직 급(위) :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는 직무관련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비용 등의 지출 및 회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민사소송)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의 법률지원에 동의하며,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일체를 즉시 인천광역시 서구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

피 고 인 :

(피의자)

사건번호 :

사 건 명 :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는 변호사 법무법인 ○○○○
 (주소 : 시 구 동 로 번지 ☎○○○-○○○○)의 ○○○
 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선임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중

<별지> 피의자가 다수인 경우

1.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2.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3.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4.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5. 성 명 : (인)

주 소 :

관 계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1. 청렴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4조(포상 등)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근무평정시 가점
2. 상급
3. 그 밖의 포상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 령 상

(소 속) ○○○○○○

(직, 성명) ○○○ ○○○

위 직원은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청렴한 공직자로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초과 할 ”을 “초과할”로, “재위촉 할”을 “재위촉할”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 할 수”를 “제한할 수”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일임 할”을 “일임할”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 공 고 제 호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동 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동 장

1. 후보자 등록대상 : 통장

2. 후보자 등록 신청

가.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년 월 일 ~ 월 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신청장소·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 (대리나 우편은 불가)

다. 자 격

- ①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30세 이상의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 ③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라. 제출 서류

- ① 통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및 이력서 (별지 제2호서식-동 주민센터 비치)
- ② 봉사활동 실적 및 참고자료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그 밖에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언론보도, 구보 등)
- ③ 해당 통 지역주민(세대주)의 통장 후보자 동의서 (별지 제13호 서식- 동 주민센터 비치)

마. 위촉절차 및 방법

-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통장이 위촉
-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바.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032)560-0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통 장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통 명 : 동 제 통
2. 성 명 : (한자)
3. 생 년 월 일 :
4. 주 소 :
5. 직 업 :
6. 최 종 학 력 :
7. 주 요 경 력 :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동 제 통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귀하

구비 서류 이력서, 봉사활동실적, 기타

[별지 제4호서식]

위 축 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 로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 통장 위축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 월 일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별지 제5호서식]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 의 기 준			배점	성명 및 심사결과			비 고
총 점			100				
지역사회 기여도	1. 관할구역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10				◦ 주민등록등본 확인
		나. 2년 이상	7				
		다. 2년 미만	5				
	2. 최근5년간 사회봉사 활동실적	가. 100시간 이상	10				◦ 자원봉사 인증기관이 발행하고 자원봉사 프로 그램을 활용한 확인서만 유효
		나. 60시간 이상	7				
		다. 30시간 이상	5				
		라. 30시간 미만	3				
	3. 해당통 지역주민 동의	가. 10% 이상	10				◦ 세대주 동의 (별지 제13호서식)
		나. 5% 이상~10% 미 만	5				
다. 5% 미만		3					
업무수행 능력	4. 직업점직	가. 직업 없음	10				◦ 사실확인
		나. 자유(영)업 종사	7				
		다. 직업 있음	3				
	5. 행정 관심도(참여)	가. 탁 월	30				◦ 구 및 동 업무내용 파악 등
		나. 우 수	15				
		다. 보 통	5				
면접평가	6. 면 접	가. 탁 월	30				◦ 질문 답변을 통해 확인 ◦ 질문서는 지침으로 관리
		나. 우 수	15				
		다. 보 통	5				

주) 1. 모든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사회 기여도」 중 「해당통 지역주민 동의」 사항은 통 여건에 따라 심사기준
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 통장위촉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6호서식]

통장 위촉 심사 결과서

안 건	동 통장 위촉에 따른 후보자 심사		
심의내용	통장후보자 중 적격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하여 통장 후보자 순위를 결정함		
순 위	성 명	평 점	비 고
1			
2			
3			
4			
5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동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동 통장위촉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심사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동 통장위촉심사위원

(서명)

동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위 축 장

인천광역시 서구 동 로

귀하를 인천광역시 서구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장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70호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안내판 등
3. 갯벌 체험장

제2조제4호 중 “기타 구청장이 어촌체험마을”을 “그 밖에 구청장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어촌체험마을”을 “제3조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공보”를 “구보”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2개월전”을 “2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직원”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수탁자는 물품관리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어촌체

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기타수익금”을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촌체험마을”을 “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어촌체험마”를 “어촌체험·휴양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를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수탁결정통지서

시설명 :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법인(단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구와 협약하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위탁관리운영협약서(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일원

시설물 : 마을종합안내소, 마을공동작업장, 휴게쉼터 및 바비큐장, 발농사체험장, 갯벌체험장, 안내관 등

위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서구청장을 (이하 “위탁자”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관리 기간) ① 위탁자는 위 표시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수탁자의 연장신청을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 위탁자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수탁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화재, 도난, 가스사고등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조(해지조건)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위탁자의 지시를 위반 또는 불응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세

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해지통보) 위탁자와 수탁자가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원상회복) 수탁자가 사용한 시설물을 위탁자에게 반납할 때, 위탁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 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예정일) ① 운영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위 기간 내에 수탁자가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과 본 협약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가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

수탁자 : 법인(단체)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 점검표

담당자	담 당	과 장

분야별	점검대상	점검결과	조치사항
건 축	건 축 물 조 경 토목구조물		
기 계	냉, 온수기 보 일 러		
전 기	메인 판넬 선로 누전상태		
통신 음향	음 향 설 비 통신, 방송설비		
기 타			

제5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용자조건 및 용자금액”을 “제4조에 따른 기금용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자조건 및 용자금액 ”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를 “여신관리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용자대상자심의서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용자대상자심의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회계공무원 근무기간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용 자 신 청 서																					
신 청 인	①대표자성명		②생년월일																		
	③업 소 명		④전 화 번 호																		
	⑤주소(소재지)		⑥사업자등록 번 호																		
사업체규모	⑦영업장총면적	m^2	⑧자 산 총 액	천원																	
대 상 업 종	⑨업 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식품접객업소 <li style="width: 50%;">· 모범음식점 <li style="width: 50%;">· 식품제조가공업소 <li style="width: 5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 및 도입준비업소 <li style="width: 50%;">· 기 타(화장실) 																			
자 금 용 자 신 청 내 역	⑩실소요 금액		⑪용자신청금액	⑫ 비 율 (⑪/⑩)																	
				%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3">신청서류확인</th></tr> <tr><td>담당자</td><td>담 당 과 장</td><td></td></tr> <tr><td> </td><td> </td><td> </td></tr> </table>		신청서류확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년 월 일 신청인 (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h colspan="2">지 정 은 행</th></tr> <tr><td>은행명 (지점명)</td><td></td></tr> <tr><td>대 출</td><td>가능, 불가</td></tr> <tr><td>확인자</td><td>(인)</td></tr> </table>		지 정 은 행		은행명 (지점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신청서류확인																					
담당자	담 당 과 장																				
지 정 은 행																					
은행명 (지점명)																					
대 출	가능, 불가																				
확인자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시설개선용자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용자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영업허가(신고)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용자신청업소 현지조사서				
용자신청자	성 명		<u>생년월일</u>	
	주 소		전 화 번 호	
업 소 현 황	업 소 명		허 가 번 호	
	업 종		허 가 일 자	
시 설 규 모	대 지		건 물 규 모	
	영업장면적	m ²	구 조	
기타(좋은식단 실천여부등)				
조사자의견	(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 기재)			
	[첨부] 시설개선 전 사진			
<p>위와 같이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용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담 당 : 소속 직 성명 (인)</p>				

【별지 제9호서식】

용자대상자심의서

1. 신청업소 현황

신고번호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일		공사소요액	총 백만원 (* 신청액 : , 자부담 :)			

2. 용자대상자 선정 확인사항

시설개선용자심의내용	심의결과
1. 휴·폐업 여부	
2. 용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변태영업행위 행정처분 여부	
3. 용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회이상 영업정지 행정처분 여부	
4. 용자한도액을 용자받은 업소로서 상황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3. 신청서류 확인사항

신청서류	사실확인	적	부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시설개선용자사업계획서			
3. 시설개선용자사업이행확약서			
3. 공사견적서			
4. 영업허가(신고)증사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20__년 월 일

심의위원장 (실·과장)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주무담당) 직 성명 (인)
 심 의 위 원(실무담당)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 서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관련부서 과장,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자원봉사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됨으로 간사와 서기를 센터의 팀장으로 변경

주요내용

-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부서 과장 및 자원봉사센터장으로 변경(제4조)
-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자원봉사센터장에서 총무기획팀장으로 서기를 총무기획팀장에서 교육홍보팀장으로 변경(제10조)

회”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8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 중 “ 두며 간사는 센터장, 서기는 총무기획팀장”을 “두며 간사는 총무기획팀장, 서기는 교육홍보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물품관리조례”를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8조제4항 본문 중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를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준용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를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 중 “제18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자의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를 “제18조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의 결정기준은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법제사무 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패영향평가 관련 자료

제5조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5항이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에서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로 2014. 7. 1.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반납 절차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지정절차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발부절차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반납절차

-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 등
 - 관리를 위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의 면제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범위내)
 -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홍보 지원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교통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 전화번호 : 032-560-4872 (FAX 560-2794)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구청장 포상
3.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제9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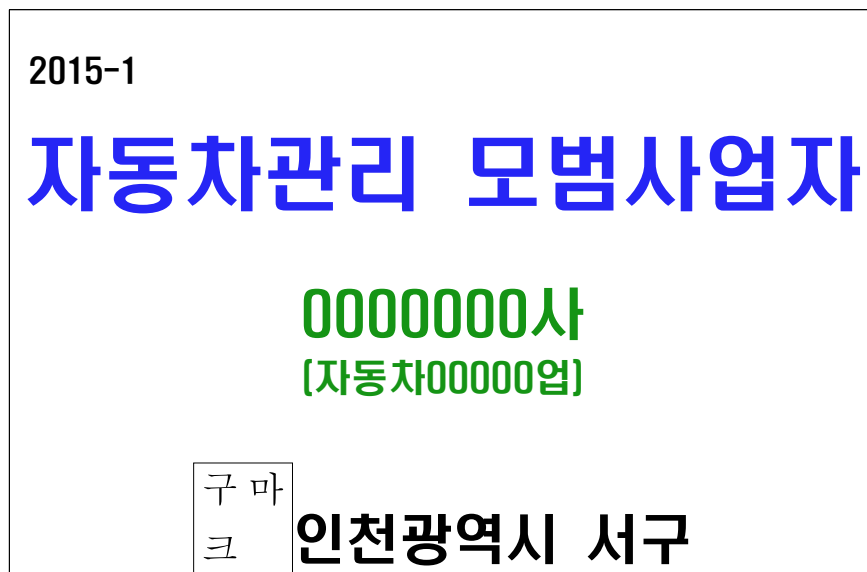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cm(가로)×30cm(세로)

나. 재질 :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나. 색상

○ 바탕 : 은회색

○ 글씨 :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는 청색, 상호는 녹색, 그 외는 흑색

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체명 :
- 대표자 :
- 소재지 :
- 업 종 :
- 유효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 인

관계법령 발췌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491호

2015.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 7. 1기준으로 분할·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3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대 상

- 2015. 7. 1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1,249필지)

나. 결정내용 : 필지별 m²당 가격

다. 결정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

2. 이의신청

가. 대 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5. 10. 30 ~ 11. 30.

다.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구 토지정보과)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민원서식」란에 게재

마. 접수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5년11월30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4.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공시지가	원/m ²	의견가격
	신청사유		
		원/m ²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